


BSMI (대만표준검험국)

1. 개요

<p>■ 정의</p>	<p>-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대만표준검험국)</p>
<p>■ 개요</p>	<p>- BSMI은 인가기관으로서 대만 국내외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만과 MRA를 맺은 국가의 인가기관이 지정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도 대만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 및 시험업무를 할 수 있다.</p> <p>- 제품의 검사는 선적물 검사(Batch by Batch Inspection), 모니터링제도(Monitoring Inspection), 제품인증등록(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RPC) 및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등 4개 제도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p> <p>- 적용가능한 적합성 평가절차는 제품의 특성뿐만 아니라 적용기술, 산업발전 및 국제규격의 적용가능성 등과 같은 기타 요소들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검사는 선적물 검사, RPC 및 DOC 등 세 가지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p>
<p>■ 인증마크</p>	
<p>■ 관련기관</p>	<p>- 대만표준검험국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 Inspection / BSMI) : www.bsmi.gov.tw</p> <p>- 대만 경제부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 MOEA) : http://www.moea.gov.tw</p>
<p>■ 대상품목</p>	<p>- 화학, 기계, 전기전자제품 등</p>
<p>■ 적용국가</p>	<p>- 대만</p>
<p>■ 적용규격</p>	<p>- CNS</p>
<p>■ 규제법규</p>	<p>- 대만 상품검험법</p>
<p>■ 기타</p>	<p>- 제품인증등록(RPC) 제도에는 총 7개의 모듈이 있는데, 이는 제품의 성격이나 해당되는 기술기준에 따라 구분된다.</p>

2. 배경

소비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만 국내외 농업, 공업, 광업 제품은 선적,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해당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제품의 검사는 선적물 검사(Batch by Batch Inspection), 모니터링제도(Monitoring Inspection), 제품인증등록(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RPC) 및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등 4개 제도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 Inspection; BSMI)은 4개의 적합성 평가 절차가 명시된 “상품검험법(Commodity Inspection Act)”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한다. 제품에 대한 시험도 BSMI 또는 BSMI가 지정한 시험소에서 행해진다.

적용가능한 적합성 평가절차는 제품의 특성뿐만 아니라 적용기술, 산업발전 및 국제규격의 적용가능성 등과 같은 기타 요소들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검사는 선적물 검사, RPC 및 DOC 등 세 가지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BSMI은 인가기관으로서 대만 국내외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만과 MRA를 맺은 국가의 인가기관이 지정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도 대만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 및 시험업무를 할 수 있다.

3. 선적물 검사(Batch by Batch Inspection)

선적물 검사는 위험요소가 있는 불안정한 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적용된다. 대만 국내산이나 수입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선적 혹은 수입 전에 BSMI에 제품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BSMI는 선적물 검사의 간소화를 위해 신청하기 전 형식승인인증서(Type Approval Certificate)를 득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선적물 검사 신청절차

신청자는 제품이 도착하면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항 심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 신청 시 신청자는 심사비를 지불하고, (규정에서 요구시) 형식승인인증서 또는 상품검험법 제28조에 언급된 증거물, 관련 시험 및 제조기록 또는 관련 고시문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심사에 필요한 기타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신청이 대리인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서류 등도 첨부해야 한다.

나. 형식승인 선적물 검사(Type Approved Batch Inspection / TABI) 신청절차

이 절차에 따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BSMI 또는 BSMI가 지정한 시험소로부터 제품에 대한 형식시험을 받아야 하며, 그후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따라 BSMI 본부나 지사에 형식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형식승인인증서를 받으면 제품이 제조공장을 벗어나거나 통관항에 도착하기 전에 BSMI에 심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BSMI는 간소화 된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시험을 위해 시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형식시험 수수료는 제품에 따라 다양하며 시험소에 따라 달라진다. 형식승인 수수료는 NT\$3,500이며, 형식승인인증서는 3년간 유효하다.

4. 모니터링제도(Monitoring Inspection)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만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 MOEA)는 2002년 1월 9일에 “모니터링제도 대상제품에 관한 조치(Measures Governing Commodities Subject to Monitoring Inspection)”를 공표하였다. 현재 114개의 화학제품이 이 제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시멘트, 석유, 화재방지 페인트, 화재방지 건설자재, 화재방지 벽지, 타이어 및 인형 등이 있다.

모니터링제도는 신뢰에 기반한 선적물 검사제도의 간소화된 형태이다. 특정제품의 선적물이 선적물 검사를 통과하면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선적물 확인, 무작위로 선정된 선적물 검사, 서류 조사 및 모니터링의 방식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심사 방식은 다시 선적물 검사방식이 될 것이다. 또한 BSMI로부터 경영시스템인증을 취득한 제조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또 승인을 위해 심사기록이 제출되면 BSMI도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세관통과 및 선적에 대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심사에 관련된 기관 및 제조업체의 인력낭비를 줄이는 한편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제품의 시장진입을 막는 효과가 있다.

□ 신청절차

수입품의 경우 제품이 도착하면 통관항 심사국에 신청을 하거나, 대만 국내산의 경우 제품이 제조부지에서 나가기 전에 제조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심사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방문,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으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할 때 신청서와 함께 심사비, 관련 시험기록, 제조기록 및 관련 고시문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대리인이 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심사신청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심사국에 등록해야 하며, 신청자를 대신하여 신청절차를 처리하면 된다.

5. 제품인증등록(RPC) 제도

선적물 검사(Batch by Batch Inspection)는 지난 40년간 지속되어온 전통적인 적합성 평가 방법이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시험능력이 향상되고 무역확대의 일환으로 기존의 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WTO 가입을 준비하면서 당시 인증제도의 변화에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7년 상품검험법(Commodity Inspection Act)을 개정하여, 세관통관에 필요한 시간과 동일한 유형의 제품에 대한 반복조사를 줄이기 위해 제품 등록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제품인증등록(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RPC)이라 명명된 이 새로운 시스템은 1999년 7월에 발효되었는데 시행초기에는 산업제품만 해당되었다. BSMI는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기 전에 많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사전예방적 조치보다는 사후시장감시 등을 통하여 사전에 소요되는 절차를 줄여 시간을 경감토록 하였다.

RPC 제도에는 총 7개의 모듈이 있는데, 이는 제품의 성격이나 해당되는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구분된다. EU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법과 유사하게 모듈 일부는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는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7개 모듈은 제품의 설계 및 제조단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적합성 평가절차가 설계단계에서 완료될 수 있다는 점이고, 제품이 아직 대량생산이 되지 않았을 때 강제안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BSMI는 RPC 등록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MRA를 맺은 인가기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형식시험을 받을 수 있고, 또 지정받은 인증기관에서 품질시스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가. RPC의 7개 모듈

(1) 모듈 I(내부제어)

동 모듈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적은 단순설계제품에 적용된다. 국내 제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의 현지공급업체가 등록신청서와 적합성 선언서(DOC)를 제출하면 된다.

(2) 모듈 II(형식시험)

동 모듈은 일반적으로 고정건축자재 및 대량생산제품에 적용된다.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지정기관에 신청서와 함께 시료를 제출하면 된다. 시료가 기술기준을 충족하면 지정기관은 형식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 동 모듈은 다른 모듈과 함께 사용된다.

(3) 모듈 III(형식적합선언)

형식적합선언서는 제조업체 또는 대행업체가 작성한다. 이때 선언서는 제품이 형식시험 성적서에 나온 형식에 부합하고 있음을 나타내면 된다.

(4) 모듈 IV(전체 품질보증)

제조부지는 CNS 12680 (ISO 9000) 규격에 부합하도록 설계, 개발, 제조, 설치 및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품질관리시스템을 설립해야 하며, BSMI 또는 BSMI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제조된 제품이 형식시험성적서에서 나온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형식적합선언서가 필요하다.

(5) 모듈 V(제조품질보증)

제조부지는 CNS 12680 (ISO 9000) 규격에 부합하도록 제조, 설치 및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품질관리시스템을 설립해야 하며, BSMI 또는 BSMI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제조된 제품이 형식시험성적서에서 나온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형식적합선언서가 필요하다.

(6) 모듈 VI(제품품질보증)

제조부지는 CNS 12680 (ISO 9000) 규격에 부합하도록 제품에 대한 최종검사 및 시험 등

을 아우르는 품질관리시스템을 설립해야 하며, BSMI 또는 BSMI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제조된 제품이 형식시험성적서에서 나온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형식적합선언서가 필요하다.

(7) 모듈Ⅶ(공장심사)

제조부지는 BSMI이 명시한 필요조건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설립해야 하며, BSMI 또는 BSMI가 인정한 기관이 발행한 공장심사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제조된 제품이 형식시험성적서에서 나온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형식적합선언서가 필요하다.

위의 7개 모듈 중에서 모듈 I 은 단독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모듈Ⅲ, IV, V, VI, Ⅶ은 모듈Ⅱ와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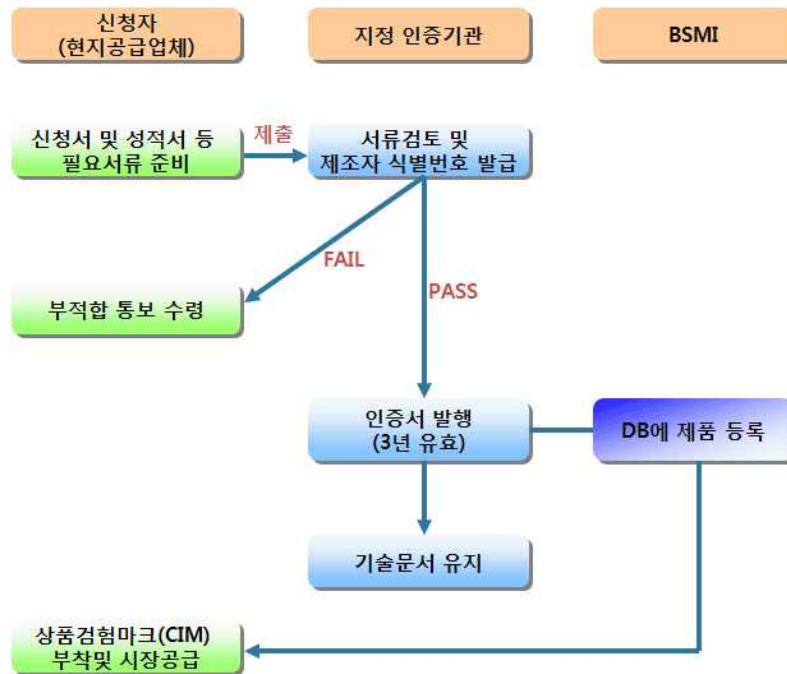
나. 적합성 평가서류

다음은 위의 모듈과 관련한 적합성 평가서류이다.

- (1) 모듈 I : 내부통제선언서, 지정된 기술문서
- (2) 모듈Ⅱ+Ⅲ: 형식시험성적서, 형식적합성선언서, 관련 정보 및 지정된 기술문서
- (3) 모듈Ⅱ+Ⅳ: 형식시험성적서, 형식적합성선언서, 관련 정보 및 지정된 기술문서, 설계·개발·제조·설치 및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CNS12680 (ISO9000) 규격에 맞는 품질시스템에 대한 적합성을 선언한 인증서 사본
- (4) 모듈Ⅱ+Ⅴ: 형식시험성적서, 형식적합성선언서, 관련 정보 및 지정된 기술문서, 제조 및 설치 등을 포괄하는 CNS12680 (ISO9000) 규격에 맞는 품질시스템에 대한 적합성을 선언한 인증서 사본
- (5) 모듈Ⅱ+Ⅵ: 형식시험성적서, 형식적합성선언서, 관련 정보 및 지정된 기술문서, 최종 검사 및 시험 등을 포괄하는 CNS12680(ISO9000) 규격에 맞는 품질시스템에 대한 적합성을 선언한 인증서 사본
- (6) 모듈Ⅱ+Ⅶ: 형식시험성적서, 형식적합성선언서, 관련 정보 및 지정된 기술문서, 공장심사보고서

다. RPC 인증 신청절차

(1) 지정 인증기관에 의한 RPC 인증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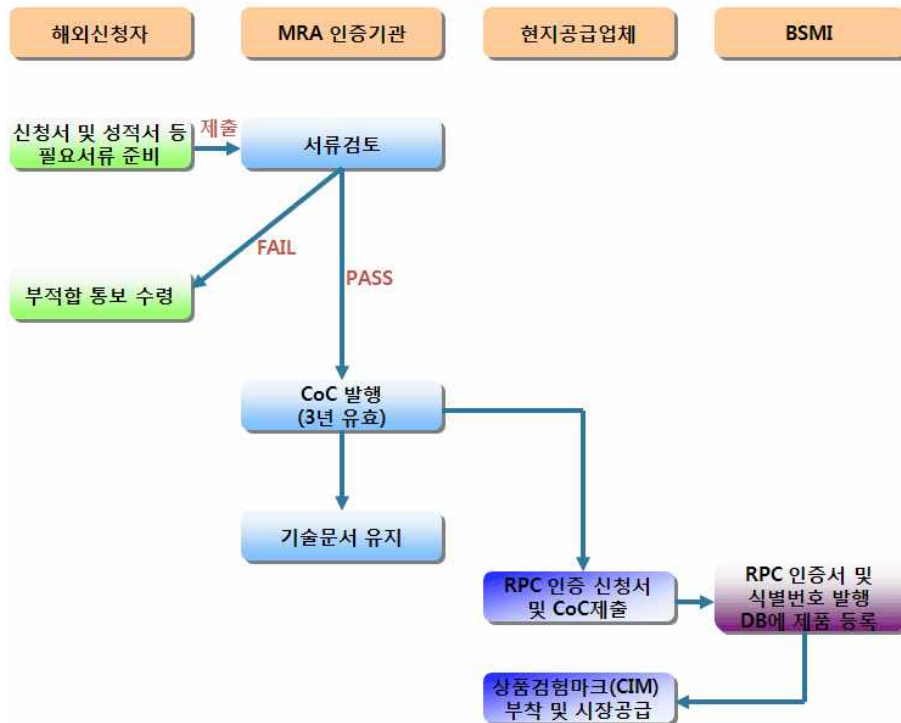


신청자(대만 국내외)가 RPC 제도에 해당하는 규제품목을 대만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형식시험소로 지정된 국내외 시험소 또는 MRA를 통한 지정시험소에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에 통과하면 지정시험소는 시험성적서를 발행한다.

그 후 현지 공급업체는 성적서와 필요서류를 지정된 인증기관에 보내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증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식별번호를 발급한다. 시험성적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 판명되면 지정된 인증기관은 강제품목을 재시험하지 않고 인증할 수 있다. 인증을 받으면 인증기관은 RPC 인증서를 발행한다. 그러면 BSMI는 인증 받은 제품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인증 받은 제품의 등록을 위해서는 RPC 신청서, 제조공장목록, 모델별 등록수수료, 적합성 평가문서 및 형식적합선언서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공급업체는 상품검험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품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급업체는 변경유형에 따라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또한 인증기관은 등록된 제품에 대한 기술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2) MRA 인증기관에 의한 RPC 인증 신청절차



해외신청자가 RPC 제도에 해당하는 규제품목을 대만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형식시험소로 지정된 국내외 시험소 또는 MRA를 통한 지정시험소에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에 통과하면 지정시험소는 시험성적서를 발행한다.

신청자는 MRA를 통한 지정 인증기관에 성적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을 받도록 한다. 시험성적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 판명되면 지정된 MRA 인증기관은 강제 품목을 재시험하지 않고 인증할 수 있다. 제품이 인증을 받으면 MRA 인증기관은 CoC (Certificates of Conformity)를 신청자에게 발행한다. 인증내용은 RPC 인증서의 모든 품목을 포함하게 된다.

그 후 현지공급업체는 CoC를 BSMI에 제출하여 RPC 인증서를 신청하고 해당 제품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요청한다. BSMI가 CoC를 받으면 RPC 인증서 및 식별번호를 발급하고 제품을 DB에 등록한다. 인증 받은 제품의 등록을 위해서는 RPC 신청서, 제조공장 목록, 모델별 등록수수료, MRA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형식적합선언서 등이 필요하다. 이후에 공급업체는 상품검험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청자 및 공급업체는 변경 유형에 따라 MRA 인증기관 및 BSMI에 알려야 한다. 또한 인증기관은 등록된 제품에 대한 기술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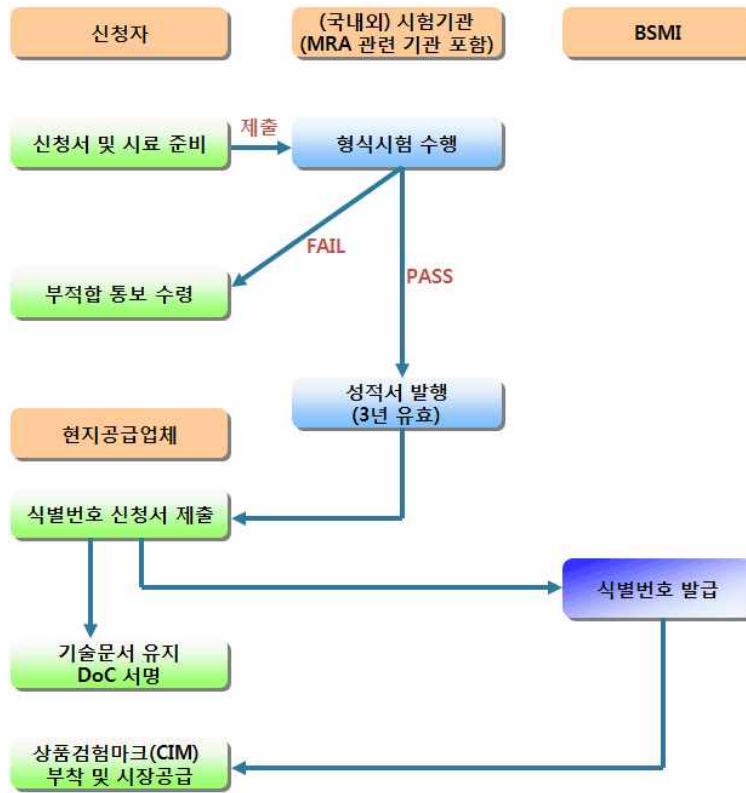
상품검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의 등록뿐만 아니라 MRA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의 등록도 자동화되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특정 MRA의 조건에 따라 추가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6.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제도

무역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일환으로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 DOC)은 지난 몇 년간 대만 안팎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제조업체의 DOC 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감시체제가 자리를 잡아야 소비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DOC는 제조기술이 이미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러 리스크 우려가 적은 제품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다.

BSMI가 특정제품에 적용하기 위해 고시한 DOC에 따라 제조업체는 BSMI가 지정한 시험소를 선택하여 시험을 받고, 자체적으로 기술문서를 준비하며,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제품들은 BSMI가 시장감시를 수행하고 있는 시장에 출시된다. 이러한 사후시장관리 접근방식은 사전시장관리 또는 까다로운 통관절차보다 제조업체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DOC 신청이 허용된 제품은 세관심사의 제지 없이 수입될 수 있으며, 현재 19개 품목이 허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전자계산기, 데이터 저장장치, 메인보드, 컴퓨터 전원장치 등이 해당된다.

가. DOC 신청절차



신청자가 DOC 제도에 해당하는 규제품목을 대만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형식시험소로 지정된 국내외 시험소 또는 MRA를 통한 지정시험소에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에 통과하면 지정시험소는 시험성적서를 발행한다.

그 후 현지공급업체는 BSMI에 DOC를 위한 식별번호 신청서와 함께 NT\$ 1,000의 등록 수수료를 지불한다. 신청서를 받으면 BSMI는 식별번호를 발행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공급업체는 상품검험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 공급할 수 있다. 현지공급업체는 등록된 제품에 대한 기술문서를 보관하고, 적합성을 선언하여 DOC를 유지하면 된다.

제품이 변경되는 경우에 공급업체는 변경유형에 따라 MRA 시험기관 또는 BSMI에 알려야 한다.

7. 상품검험마크(Commodity Inspection Mark / CIM) 및 인증번호

상품검험법에 명시된 강제대상품목은 인증이 완료된 후 상품검험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동 마크는 “상품검험마크에 관한 규정”에 맞게 표시되어야 한다.

가. 마크유형

선적물 검사(Batch by Batch Inspection) 및 모니터링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물품이 검사에 통과하는 경우 다음의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아래는 인증제도 및 품목에 따른 마크를 나타낸 것인데, 관련 규정에 따라 BSMI의 승인을 얻어 제조업체가 인쇄하여 부착할 수 있다.

인증제도	마크	해당품목
RPC 인증	 R30001	전기전자, 방화설비, 건설자재, 가스용품, 유아제품, 전기수공구, 개인방호용 장비 등
DOC	 D30001	컴퓨터제품, 메인보드, 인서트카드 등
형식승인 선적물 검사	 T30001	가스통, 라이터 등
모니터링제도와 관련된 경영시스템 등록제품	 Q30001	시멘트, 내화코팅 등
모니터링제도와 관련하여 제조업체가 인쇄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M30001	인형 등

나. 인증번호

(1) RPC 인증제도

RPC 인증번호는 14자로 구성되며, 신청서 상의 신청번호와 동일하다.

예 : CI 3 A 1 06 001 001 7

순서대로 전자문서코드, 관할구역번호, 신청자 식별코드, 연도, 제품종류, 신청자 식별코드, 제품형식코드, 관세확인코드이다.

여기서 제품인증 식별번호는 다음과 같이 6자로 구성된다.

예 : R 3 A 001

알파벳 R과 위 인증번호 중 관할구역번호, 신청자 식별번호로 구성된다.

(2) DOC 제도

DOC 제도에 관련된 공급업체 식별번호는 다음과 같이 6자로 구성된다.

예 : D 3 A001

알파벳 D와 관할구역번호,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다. 표시방법

마크의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적절한 비율로 제품 자체에 부착되어야 한다. 특히 강제품목과 관련하여 마킹할 시에는 보기 쉽고, 지워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부착해야 한다. 해당 마크가 아닌 다른 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식별번호(Identification Number 또는 Registration Number)와 상품검험마크는 원칙적으로 인증 받은 제품에 부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품이 너무 작아서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 포장재 내·외부나 태그 또는 BSMI가 승인한 기타 방법으로 부착할 수 있다.

8. 변경

공급업체는 등록제품이 변경으로 인한 재인증이 필요한지 여부를 BSMI에 확인하고, 등록제품에 대한 기술파일을 업데이트하여 변경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비기술적인 변경은 색상변경이나, 제조과정 또는 제조업체의 변경이 없는 단순 제조공장 위치의 변경, 생산연도의 변경 등이 해당된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절차를 따르면 된다.

가. 기술적인 변경여부에 따라 모델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1) RPC 신청절차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BSMI에 제품을 재등록(파생모델 등록)해야 한다.
- (2) RPC 신청절차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MRA 인증기관에서 제품을 재인증 받아야 한다.
- (3) 기존 인증번호에 추가해서 새 일련번호를 가진 새로운 인증서가 필요하다.
- (4) 공급업체는 기존 기술파일에 관련 자료를 추가해야 한다.

나. 변경사항이 모델번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변경사항이 기술적인 것이거나 기본설계는 같지만 RPC 인증서에 나온 등록정보에 영향을 주는 경우

- (1) 현지공급업체는 지정 인증기관 또는 BSMI에 시험성적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2) MRA 인증기관이 발행한 새로운 인증서의 경우에는 BSMI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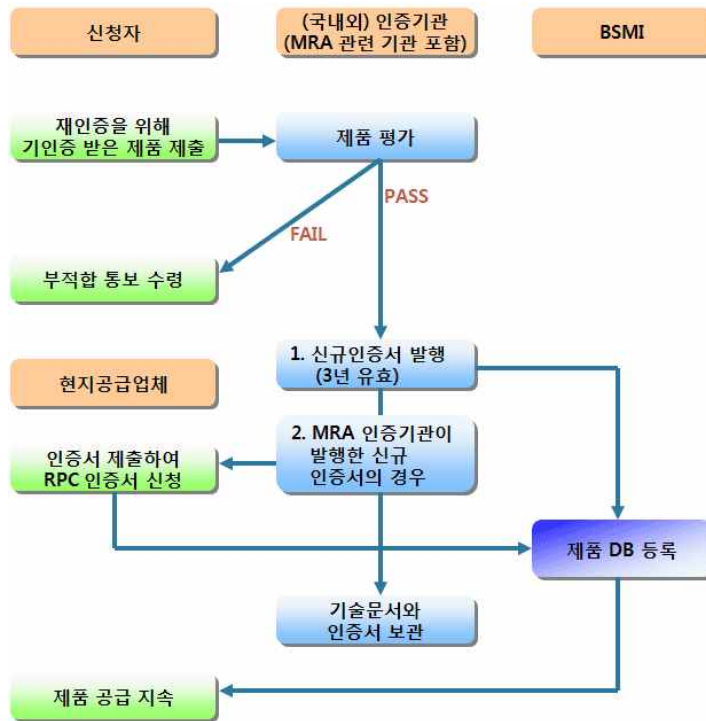
다. 변경사항이 모델번호에 영향을 주지 않고, RPC 인증서에 나온 등록정보, 제품의 EMC, 안전 및 기타 규제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기술적인 경우

- (1) 해당 제품을 BSMI에 재등록하거나, 인증기관 또는 MRA 인증기관에서 재인증 받을 필요는 없다.
- (2) 현지공급업체는 단순 변경내용을 포함하는 기술파일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 (3) 현지공급업체는 변경사항이 위의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해야 한다.

DOC와 관련하여 제품이 기술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현지공급업체는 DOC 신청절차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여 새로운 선언서를 발행해야 한다.

9. 갱신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공급업체는 제품의 변경여부에 관계없이 인증서가 만료되기 전 지정 인증기관 또는 MRA 인증기관에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기관이 신규인증서를 발행하면, 공급업체는 신규인증서를 BSMI에 제출하여 갱신하도록 한다. MRA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신규인증서인 경우에는 BSMI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지정 인증기관 또는 BSMI에 모델별 갱신수수료(환불 불가)를 지불해야 한다. RPC 인증서는 3년간 유효하며, 갱신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갱신으로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신규신청을 해야 한다.



BSMI에 등록하지 않은 인증서를 보유한 공급업체는 해당제품이 “미등록제품”으로 간주되어 대만시장에 공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상품검험법 제60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10. 사후관리

BSMI는 필요시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대리인 창고에서 제품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RPC 제도에서 인증기관은 기술문서를 인증서 만료일 또는 마지막 갱신일로부터 최소 8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DOC 제도에서는 공급업체가 마지막 제조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최소한 5년간 기술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BSMI가 검사를 위해 기술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24시간 내에 DOC를 제공하고 관련기술문서를 10영업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11. 처벌규정

상품검험법 제60조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제품이 필요한 심사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제조부지 밖으로 방출되거나 수입 또는 수출될 수 없다. 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NT\$ 200,000 이상 NT\$ 2,0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2. 유관기관

가. 정부기관

(1) 대만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 MOEA) : 대만 정부기관으로서 경제관련 다양한 정책 및 규정 제정

- 주소 : 15 Fuzhou St., Taipei, 10015, Taiwan, ROC
- 전화 : 886-2-23212200
- 웹사이트 : <http://www.moea.gov.tw>
- 이메일 : http://www.moea.gov.tw/Mns/english/home/Feedback.aspx?menu_id=1433
- 주요업무 : 산업 및 무역, 외국직접투자, 에너지, 광물, 규격, 지적재산권, 자유무역지대 내 정부출자기관에 관한 정책 및 법규 제정

나. 인가기관


(1) 대만표준검험국(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 BSMI) : 대만 국내외 제품에 대한 검사기관이자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인가기관

- 주소 : No.4, Sec.1, Jinan Rd., Taipei City 100, Taiwan, Republic of China
- 전화 : 886-2-23431700 / 팩스 : 886 2 2393-2324
- 웹사이트 : www.bsmi.gov.tw
- 담당자 : Mr. Zhuo
- 주요업무 : 국가규격의 개발 및 홍보, CNS 마크 인증제도 관련 업무, 교정서비스, 국내외 제품에 대한 검사, 시험 및 기타 기술 서비스, 임의대상품목 제품인증, 경영시스템인증 등

13. 인증서 예제



TAIWAN COMMODITY INSPECTION SCHEMES

Appendix I-2

 經濟部標準檢驗局
THE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商品驗證登錄證書
CERTIFICATE OF THE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證書號碼：CI 315062820361號00
Certificate No.

茲據 冠軍電子股份有限公司 申請驗證登錄，經審查結果符合規定，准予登錄並使用檢驗標識  及識別號碼：R31288。其登錄事項如下：
The application made by 冠軍電子股份有限公司 for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has been reviewed and found to be in compliance with related regulations. Therefore, registration is granted with the Certification Mark  and the Identification No. R31288. Details of the registration are as follows:

申請人：冠軍電子股份有限公司 統一編號：97196205
Applicant Uniform No.

地址：白北市保安路一號十六樓
Address

生產廠場：詳如附表
Factory

廠址：詳如附表
Factory address

產品種類名稱
Type/ name of product

商品分類號列：8471.60.90.90.3
C.C.C. Code

中文名稱：15吋液晶顯示器
Chinese name

英文名稱：15" LCD Monitor
English name

型式：800P
Type

系列型式：AL588G; AL588GN (以下空白)
Series of the type

依據標準：CNS 13438(86), CNS 14336(93)
Standards

標準檢驗局或所屬分局發證
(本證書經發證機關使用鋼印後生效)
This certificate shall be issued by the BSMI or its branches.
(This certificate will become effective only when stamped with the BSMI seal.)

登錄日期：中華民國 九十五年 七 月 十七 日
Registration date (year) (month) (day)

本證明書有效期至 九十八年 七 月 十六 日
Expiration date (year) (month) (day)

發證日期：中華民國 九十五年 七 月 十七 日
Date of issue (year) (month) (day)

註一：持本證書進口時，進口人須與本證書申請人相同
註二：次年度商品驗證登錄年費繳納期限為當年11月30日，逾期未繳納者，經限期繳納未繳納，即依商品檢驗法第42條第7款規定廢止驗證登錄。

CE-01 REV.3